괴정제일교회 정관 시행세칙
(제정안)

제1장 교회 직원

제1조 교회 창설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사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 (마10:1-8).

제2조 교회 항존직원
1.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 (행20:17,28; 딤전3:1-13; 딛1:5-9).
2.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

제3조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1. 교회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2.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과 권사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으나 다시 복직은 할 수 없다.
3. 위 2항으로 은퇴하는 자에게 은퇴직을 부여하고자 하면 60세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시무한 자이거나, 65세 이상인 자라야 한다.

제4조 교회 준직원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신학대학원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제5조 교회 임시직원
교회 사정에 따라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원으로 둔다.

제6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 직원은 성경(6:5:4)에 규정한 대로 질서를 따라서 교인들의 적법한 선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교회 직원의 선거에 임한다.
1. 무릇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병환, 여행, 학업, 병역, 직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투표할 때 정원 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표와 기권은 총 투표수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잘못 기록한 무효표와 백표는 총 투표수에 가산한다.

제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
1. 동일 직원을 2인 이상 선출할 때는 이름을 복수로 기재한 투표를 허용한다.
2.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 후(장로, 집사와 권사는 당회 결의)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3. 1차 투표 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에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1.5배수 이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2차 투표 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4.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제8조 무흠의 규정
교회 직원의 무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임직에는 적용되나 복직 또는 재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무흠의 한계: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서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무흠의 시한: 그 직원을 투표하는 당일을 기준으로 역산한다. 위 1항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해벌 후부터 무흠 기간에 산정된다.
3. 항존 직원 선출 시 본 교회 등록 후 경과 기간 적용 시 이전 교회에서 장로는 4년, 집사 및 권사는 3년의 무흠 이상의 시벌을 받지 않은 자라야 한다.
4. 본 교회 등록 전 이전 교회에서 시벌을 받은 자는 해벌 후부터 무흠 기간을 적용한다.

제9조 미혼자의 교회 직분 자격 부여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는 당회에서 살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교회의 항존직원의 시무 정년
1. 교회직원의 임직 또는 시무와 관련된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며,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 한다.
2. 모든 직원의 선출 연령은 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목사

제11조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9. 지역사회에 복음 전파하는 일과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활동하는 일

제12조 부교역자의 청빙 처리
1. 부교역자의 청빙은 본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1항 이외 부교역자의 청빙과 관련된 사항은 담임목사(교회대표)에게 일임한다.

제13조 부교역자의 연임
부교역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제14조 목사의 휴무
1. 시무 중인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단기간 휴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목사의 안식 및 연구년은 시무 6년 후 7년째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휴무 기간에는 유급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장로

제15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는 자를 선정하였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16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이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딤전5:17; 롬12:7-8).

제17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0세 이상 66세 미만인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딤전3:1-7)
7.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제18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딤전5:17; 롬12:7-8).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제19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2.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당회가 후보를 1.5배수 이상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 장로의 임직
1. 장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5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본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21조 휴무장로
1. 시무 중에 있는 장로가 당회의 정한 윤번 시무규정에 따라 시무를 쉬거나, 또는 시무를 사임하게 되면 이를 휴무장로라 한다.
2. 당회가 장로의 윤번 시무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3.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중 3분의 2 이상 권고 휴무가 결의된 시무장로는 공동의회 결의 즉시 휴무장로가 된다.

제22조 무임장로
1. 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 한다.
2. 무임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그 당회의 결의를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장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24조 은퇴장로와 원로장로
1. 은퇴장로: 장로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장로라 한다.
2. 원로장로: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노후에 퇴임할 때, 그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한 장로이다. 시무 기간은 무흠 시무기간이 통산된다. 원로장로는 그 교회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25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고,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 또는 권고 사직할 수 있다.
1. 장로의 사임
   1) 자유 사임: 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 사임: 교회가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임하게 할 수 있다.
2. 장로의 사직
   1) 자유 사직: 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직하고자 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 사직: 교회가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장로의 복직
장로로서 사임 또는 사직된 자가 장로의 직을 회복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한다.
2. 사임의 경우, 당회가 사임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자유 사임자는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권고 사임자는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결의 그리고 공동의회의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복직을 허락한다.
3. 사직의 경우, 당회가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3분의 2 이상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4. 사직된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해야 한다.

제4장 집사 및 권사

제27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5세 이상 66세 미만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딤전3:8-13)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제28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9조 집사의 선택
1.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 집사의 임직
집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5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본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31조 휴무집사, 무임집사, 은퇴집사
1. 시무 중인 집사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의 또는 권고로 그 시무를 쉬게 되면 이를 휴무집사라 한다. 집사의 휴무는 당회의 결의로 시행하며, 휴무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집사가 시무한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았을 때 이를 무임집사라 하며, 무임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하여야 한다.
3. 집사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집사라 한다.

제32조 집사의 사임과 사직 및 복직
1.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약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당회가 교인 태반의 불신임과 무관하게 집사를 권고 사임 혹은 권고 사직시키고자 하면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2. 집사로서 사직된 자가 집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당회원의 추천으로 복직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5세 이상 66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4.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제34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35조 권사의 선택

1.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36조 권사의 임직, 휴무, 사임, 사직 및 복직
1. 권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5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본교회에서 취임한다.
2. 권사의 휴무, 사임, 사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와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3.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제5장 당회와 치리회

제37조 당회와 치리회의 조직과 구분
당회와 치리회는 본 교회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제38조 당회장과 치리회장
본 교회 담임목사(교회 대표)는 당회장과 치리회장이 된다.

제39조 당회장과 치리회장의 권한
당회장과 치리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 날짜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 주관
2.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 보유
3. 규칙 준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퇴장을 비롯한 제반조치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언권 침해행위 방지
5. 회원 상호간의 모욕 또는 풍자적인 언행 금지조치
6. 안건 심의의 숙의와 신속한 처리
7. 회의 중 이석의 제지
8. 안건 설명과 결정 공포
9. 비상정회 선포
10. 회집 날짜와 장소 결정 및 공지
11. 당회와 치리회의 소집, 안건 제시, 운영 제반 사항 및 회의록 시정 권한

제40조 당회(치리회) 서기
1. 당회 서기는 치리회 서기와 공동의회 서기가 된다.
2. 회의록과 문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서기를 선정한다.
3. 서기 권한은 회의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각종 서류를 보관하여 회의록 일부에 대한 등본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등본을 교부하며,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원본과 같이 취급한다.

제41조 당회(치리회) 결의 방법

1. 당회(치리회)의 결의는 정관이나 시행세칙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한 다수결로 한다.
2. 당회(치리회)의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2조 치리회 의의

본 교회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제43조 치리회의 권한

1. 본 교회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관과 교회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행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정관이나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치리회는 항존 직원의 권한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권징과 시벌을 할 수 있다.

제44조 권징

1. 권징의 대상은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입교인)과 교회 직원으로 한다.
2. 권징의 범위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치리회가 재판 혹은 행정에 의한 권징 절차를 거쳐 시벌한다.
   가.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교회내 단체의 위법사건
   나. 타인으로 범죄 하게 한 일
   다.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라.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마. 예배를 방해한 행위
   바.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아. 온라인(인터넷, 핸드폰, 팩스)과 사이버 공간에 비진리적이거나 불순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한 행위
   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차.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카. 치리회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타. 당회, 치리회,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의 폭언, 폭행, 기물 파괴 등 현장 범죄행위

제6장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개정

시행세칙 개정은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하여 개정한다.

제3조 시행세칙 내용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보충이나 필요한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행세칙 효력

시행세칙은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026년 5월 3일 제정안

대한예수교장로회 괴정제일교회